

Premium Report 제25호  
(2016. 7. 26)

# IoT 컨버전스에 대비한 경미한 공사의 범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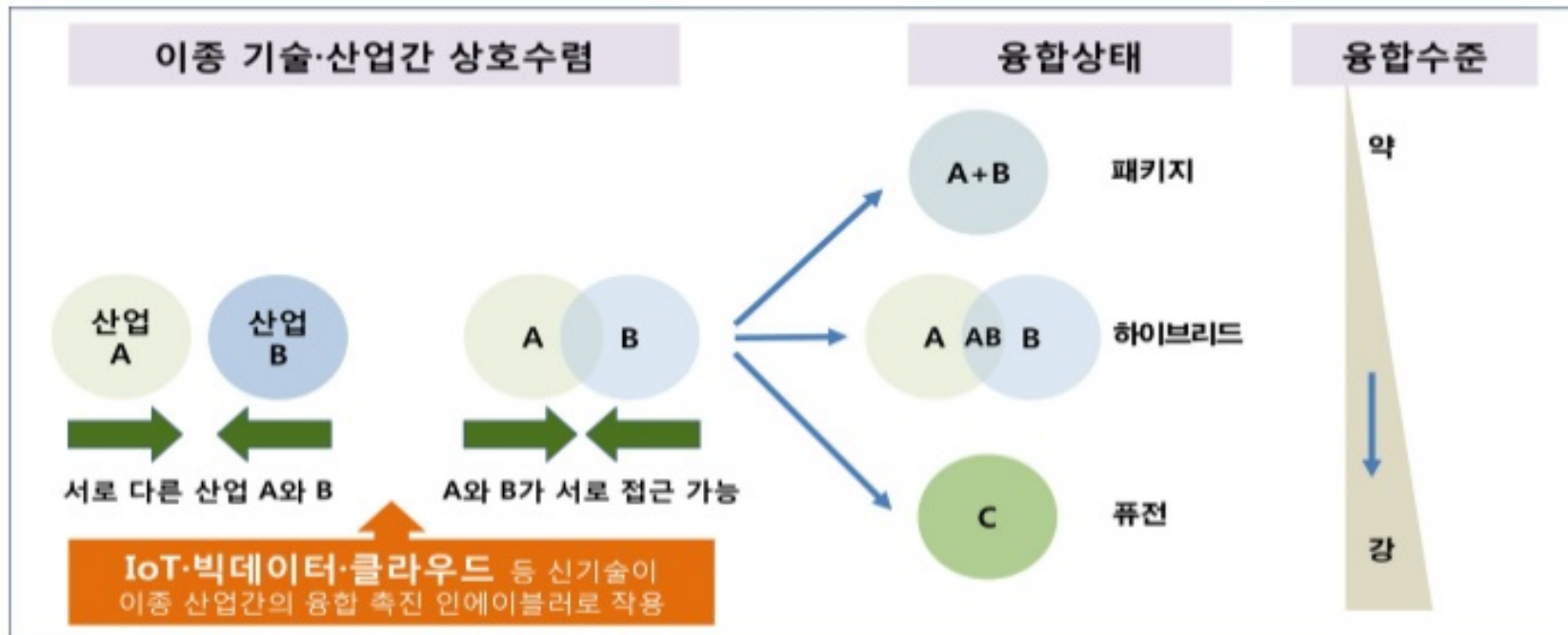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작 성 자 : 김태균 실장

내용문의 : T - (031) 231-3430 / E - [tkkim@kici.re.kr](mailto:tkkim@kic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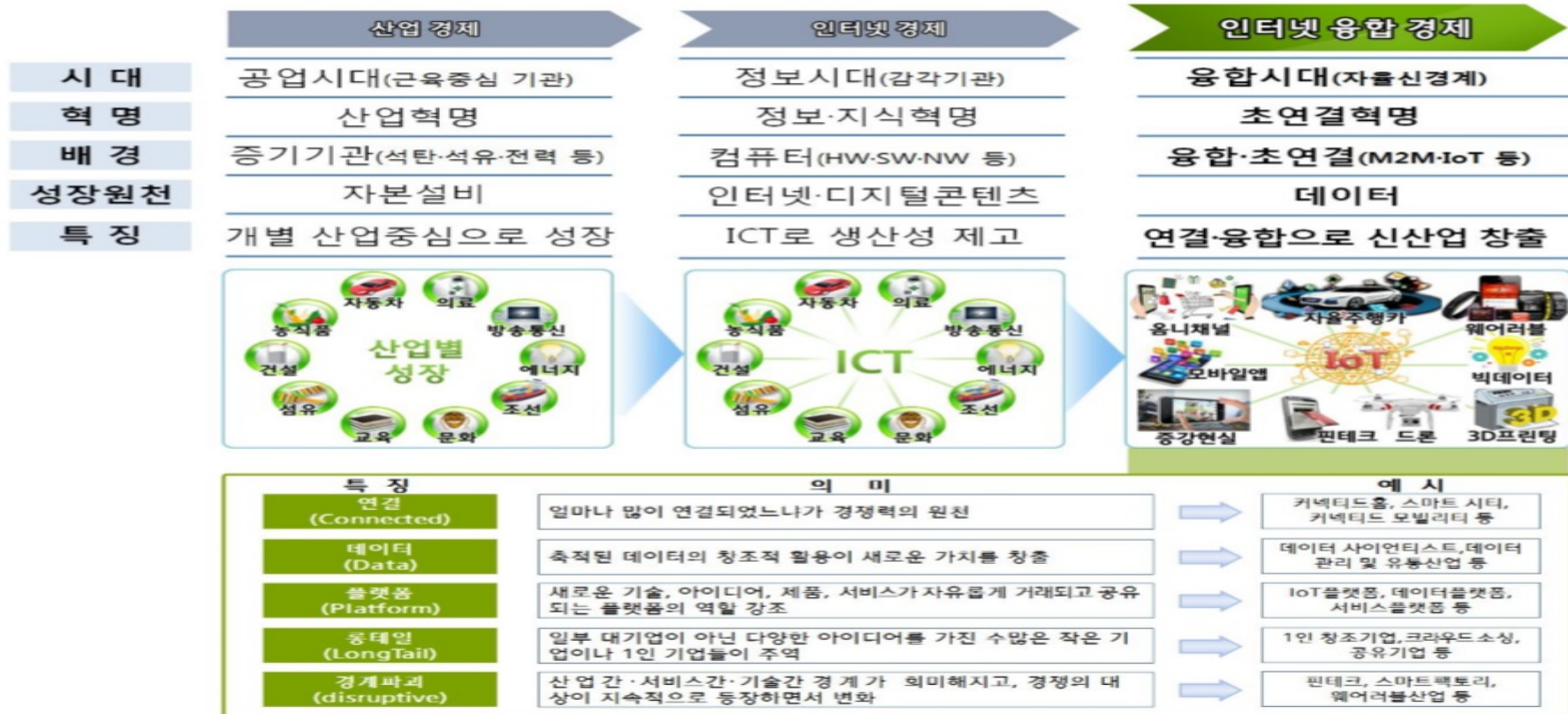
○ IoT 융합은 경제시스템,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패러다임으로 진화

- ▶ '융합(Convergence)'이 창의·혁신의 기본이 되고, 사회와 산업 생태계를 급속히 변화시키면서 국가, 사회 전분야에 걸쳐 융합이 화두로 등장
- ▶ IoT·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연결과 융합 촉진의 조력자(enabler)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융합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고 촉진



# IoT 융합의 개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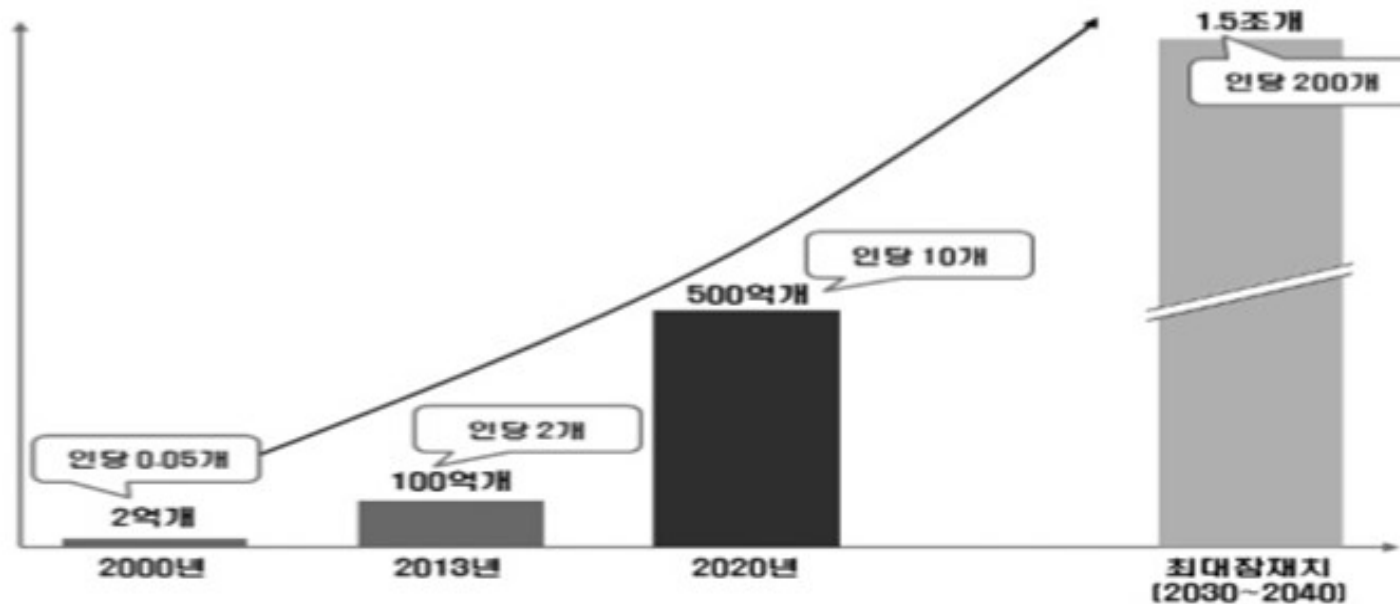
- IoT가 융합의 전기를 마련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 체계의 대전환 예고
  - ▶ IoT 확산으로 인터넷과 현실세계의 긴밀한 연계와 융·복합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산업과 경제 체계로의 전환 시작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미래전략센터

- ▶ 시스코는 2020년이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수가 50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0~2040년 1인당 200개 이르는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

### <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의 수 >



자료: Cisco

- ▶ 2013년 Machina Research가 발표한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2,031억 달러(약 203조원)에서 2020년 1조 1,948억 달러(약 1,195조원)로 연평균 약 21.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국내시장 규모는 2013년 22억 달러(2.2조원)에서 2020년 228억 달러(22.8조원) 규모로 연평균 약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사물인터넷 국내외 시장 전망 〉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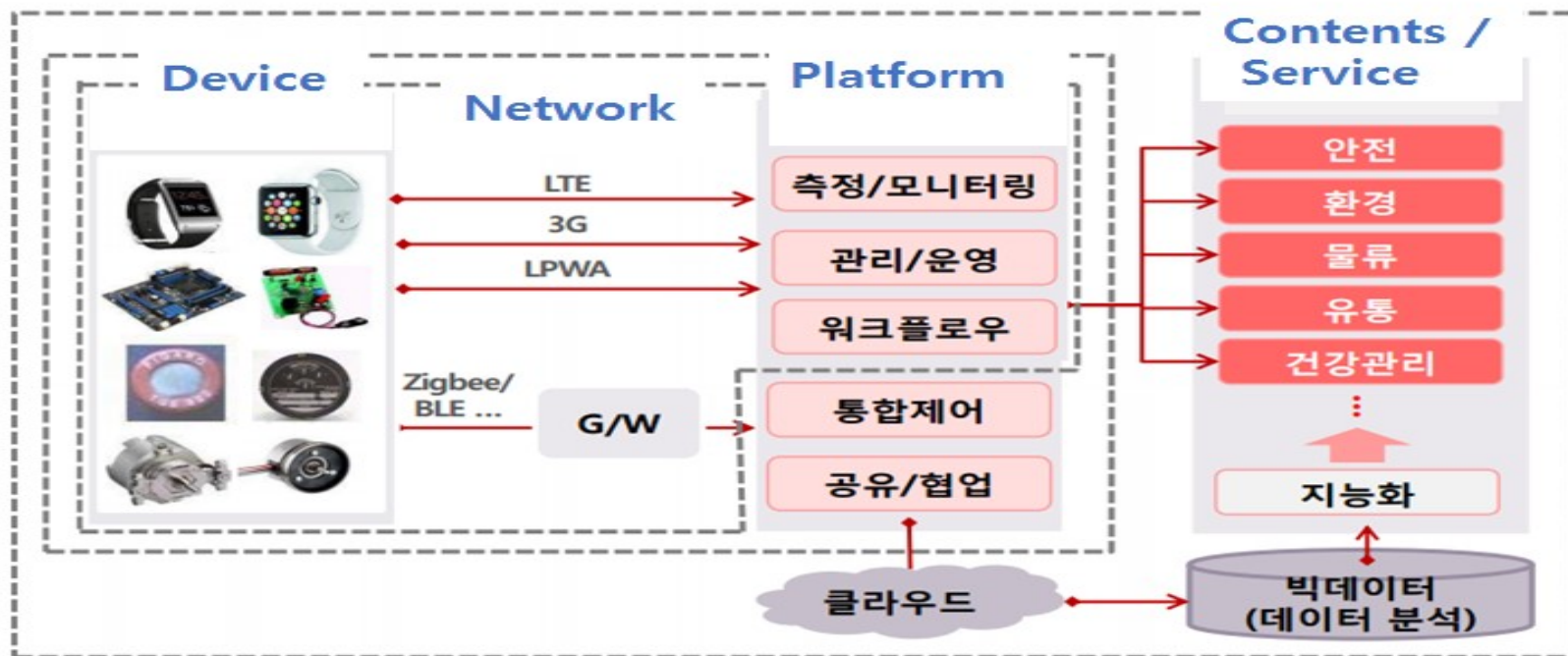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22년		
		세계시장	국내시장	시장비중	세계시장	국내시장	시장비중
제품기기 (Devices)	칩셋	5,800	38.6	0.67	28,100	130.1	0.46
	모듈	10,200	58.8	0.58	47,700	361.7	0.76
	단말기	172,800	2,119.5	1.23	369,200	9,728.1	2.63
	소계	188,800	2,216.9	1.17	445,000	10,219.9	2.30
이동통신망 (Network)	GSM <sup>1)</sup> /HSPA <sup>2)</sup>	3,100	-	-	6,900	-	-
	CDMA	4,200	11.5	0.27	7,800	24.6	0.32
	LTE	1,400	4.4	0.31	20,100	581.2	2.89
	기타	800	0.3	0.04	4,300	1.7	0.04
	소계	9,500	16.2	0.17	39,100	607.5	1.55
시스템사업자 (System Integrators)	제품기기제조사	1,200	11.2	0.93	69,400	726.1	1.05
	시스템통합사업자	1,400	18.9	1.35	143,600	2,681.2	1.87
	특정 애플리케이션 임대사업자	800	2.3	0.29	90,400	957.1	1.06
	B2B/B2C 서비스 사업자	300	1.1	0.37	52,100	84.9	0.16
	소계	3,700	33.5	0.91	355,500	4,449.3	1.25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Application/ Services)	자동차 텔레매틱스	500	3.7	0.74	149,200	3,148.1	2.11
	차량관제	100	1.1	1.10	18,600	141.7	0.76
	스마트 그리드 및 관리	200	3.7	1.85	21,500	486.6	2.26
	고정형 무선통신	100	0.2	0.20	27,100	120.6	0.45
	생활가전	100	7.1	7.10	118,400	3,285.1	2.77
	기타분야	100	0.3	0.30	20,400	361.2	1.77
소계	1,100	16.1	1.46	355,200	7,543.3	2.12	
합계	203,100	2,282.7	1.12	1,194,800	22,820.0	1.91	

자료: Machina Research(2013), 전성태(2014) 재인용

## 3

## IoT 기반 융합설비의 일반적인 구성 형태

- ▶ IoT 시장은 점차적으로 기존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위주의 “회선” 개념에서, “솔루션 및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가 연계된 각각의 가치사슬 영역도 같이 성장 및 발전하고 있음



# 4

## IoT 기반 융합설비의 일반적인 특성

- ▶ 쉬운 설치, 언제 어디서나 접속, 편리한 사용, 누구나 개발·서비스 제공
- ▶ 개인단위 서비스, 가족단위 서비스, 국가(공공시설)·공공기관·회사·단체 단위 서비스로 확대



## 5

# IoT 관련 산업 분류 및 서비스 유형

- ▶ IoT 관련 산업을 분류하면 ①홈·가정, ②교통, ③물류, ④건설(시설물), ⑤에너지, ⑥헬스케어, ⑦환경, ⑧농업, ⑨공공·안전 등으로 구분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①광업, ②교육, ③금융, ④소매(커머스), ⑤보안, ⑥스마트시티, ⑦커넥티드카, ⑧자산관리 등이 있음
- ▶ IoT 관련 산업 분류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19가지의 산업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약 196개의 IoT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추정

< 국내외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현황 : 출처 김효실·오신호 외(2015) >

구분	통신사	서비스수	산업별 통신사 사물인터넷 서비스 현황			
			산업	서비스수	산업	서비스수
국내	SKT	47	① 광업	1	⑪ 시설물	11
	KT	34	② 교육	6	⑫ 안전	15
	LG U+	26	③ 교통	9	⑬ 에너지	14
해외 (미국)	AT&T	17	④ 금융	10	⑭ 자산관리	22
	버라이즌	11	⑤ 농수축산업	7	⑮ 커넥티드카	11
해외 (유럽)	도이치 텔레콤	9	⑥ 물류	5	⑯ 헬스케어	18
	텔레포 니카	15	⑦ 보안	10	⑰ 환경	4
	보다폰	8	⑧ 커머스	1	⑱ 플랫폼	9
해외 (아시아)	차이나 모바일	11	⑨ 스마트도시	4	⑲ 네트워크	11
	도코모 NTT	18	⑩ 스마트홈	28		
합 계			196개			

▶ 최근 대표적인 IoT 융합설비에는 아래와 같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설비 등이 있음

- ① 스마트 홈 설비
- ② 스마트 파킹 설비
- ③ 사회자약자 및 안전관리 서비스 설비
- ④ 스마트 해상안전 서비스 설비
- ⑤ 스마트 가로등 설비
- ⑥ 스마트 횡단보도 설비
- ⑦ 스마트 매장 에너지 관리 설비
- ⑧ 상황 인지형 대피안내 시스템 설비
- ⑨ 지하철·경전철 스마트 안전 플랫폼 서비스 설비

▶ 개인 사용자 위주의 단말기(장치, 제품 등) 단순 설치공사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

- 시공형태 : 근거리 중심의 Sensor N/W(Bluetooth, Zigbee, Smart Utility Network, Z-wave 등)에 단말기·장치·제품을 설치하면, 단말기·장치·제품 내부에 IoT 모듈(통신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서 설정작업 또는 자동으로 링크(Link)되어 핸드폰·모바일 기기·PC 등을 통해 사용되어지는 형태
- 시공난이도 : ‘하’ 등급
- 공사규모 : 소규모(단말기 등을 소규모로 구매·설치하는 가격이 곧 공사비가 되는 수준)

▶ 국가(공공시설)·공공기관·회사·단체 단위로 단말기·장치·제품의 설치 공사 : 경미한 공사가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 영역임

- 시공형태 : 근거리 중심의 Sensor N/W과 원거리 중심의 Mobile N/W이 개별 또는 혼합된 중규모·대규모의 공사로서, 단말기·장치·제품의 설치 및 시험(동작확인) 과정이 수반되고, 모바일기기 또는 PC 등을 통해 사용되어지는 형태
- 시공 난이도 : ‘상’ ~ ‘중’ 등급
- 공사 규모 : 대규모·중규모(단말기 등의 구매가격과 시공비가 일정 부분 포함되는 공사)

- ▶ C-P-N-D가 통합된 토털 솔루션과 단말기·장치·제품의 설치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공사 : 경미한 공사가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 영역임
  - 시공형태 : 근거리 중심의 Sensor N/W과 원거리 중심의 Mobile N/W이 개별 또는 혼합된 중규모·대규모의 공사로서, 단말기·장치·제품의 설치 및 시험(동작확인) 과정이 수반되고, 응용플랫폼과 개방플랫폼을 통해 구현된 토털 솔루션으로 사용되어지는 형태 (SI와 NI가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공사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
  - 시공 난이도 : '상' ~ '중' 등급
  - 공사 규모 : 대규모·중규모(단말기·장치·제품의 구매가격과 토털 솔루션 개발비, 시공비가 일정 부분 포함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경미한 공사의 범위”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분야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에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조정과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에 대한 삭제가 필요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매년 건축허가 면적 기준 평균 92.7%에 해당)”를 경미한 공사의 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완화에 해당하며, 중간 정도 규모의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 (매년 건축허가 면적 기준 평균 63.21%에 해당)”로 조정이 필요

-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는 경미한 공사의 범주가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공사 영역으로 삭제가 필요

- ▶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에서 “회선”에 대한 용어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

-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회선” 으로만 표기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으며,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의 한계가 존재

- “회선”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문구 도입 검토가 필요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경미한 공사의 범위”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분야

▶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에서 괄호문구 “(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조정이 필요

- 입법취지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규모 전산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육성·발전 및 국가 정보화 사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미한 공사에 포함하게 된 배경임
- 그러나 최근에는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는 중규모, 대규모 공사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미한 공사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소규모 공사”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전산장비의 대·개체 공사”,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에 대한 용어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

- 애매모호한 용어 “백업장비”, “주변기기”, “전산장비”에 대해 해당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용어로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

###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1조 “경미한 공사의 범위”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분야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에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단말기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는 별도의 문구 도입이 필요

-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해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하는 것은 방송통신기기 사용자의 인체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취지이고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는 모든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을 경미한 공사로 보는 것은 시장의 경제 질서를 혼란케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항임
- 앞으로 IoT 기반 융합시대에 늘어나는 모든 단말기 설치 및 증설에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항이며,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일거리 창출과 관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 ▶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에서 애매모호한 용어 “주변기기”에 대한 용어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애매모호한 면이 있음에 따라 입찰담당자의 자의적 해석 또는 확대 해석을 통해 경미한 공사로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 경미한 공사로 분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어로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경미한 공사의 범위” 개선방안 제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개선안

- (현 행)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
- (개선안)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공사  
(연면적 규모를 조정, 폐쇄회로텔레비전 설비 삭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개선안

- (현 행)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개선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광섬유케이블 제외)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개선안

- (현 행)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의 증설공사
- (개선안) 라우터 또는 스위칭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광섬유케이블 제외)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의 증설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개선안

- (현 행)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설비 공사는 제외한다)
- (개선안)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단, 근거리통신망(LAN)에 접속되는 6대 이상의 정보통신설비(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각 목의 공사는 제외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개선안

- (현 행)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 (개선안) 서버·스토리지·입출력장치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백업장비·주변기기 용어 변경, 전산장비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 개선안

- (현 행) 전산장비의 대·개체 공사
- (개선안) 서버·스토리지·입출력장치의 대·개체 공사(전산장비 용어 변경)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다목 개선안

- (현 행)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 (개선안)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입출력장치의 설치공사(주변기기의 용어 변경)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라목 개선안

- (현 행)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구축공사
- (개선안)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구축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 가목 개선안

- (현 행)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 (개선안)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현재 사용하지 않는 차량용 전화 삭제)

##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1조(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의 범위” 개선방안 제시

##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1조 제1호 개선안

- (현 행)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개선안)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차량용 전화 삭제)

##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1조 제1호 가목 개선안

- (현 행)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
- (개선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통신선로 구축 및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동작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 단순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미래부 유권해석 내용 추가)

##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1조 제1호 다목 개선안

- (현 행)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주변기기의 설치 또는 증설
- (개선안) 개인용컴퓨터 및 입출력장치의 설치 또는 증설(주변기기 용어 변경)

##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1조 제1호 라목 개선안

- (현 행) 차량용전화기 및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증설
- (개선안) 삭제(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기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관련 개선효과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서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법령 개정 시

- (현 행)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전체 건축허가 연면적 대비 비중 : 92.7%)
- (개선안)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전체 건축허가 연면적 대비 비중 : 63.21%)

⇒ 개선효과 : 29.49% 수급영역 확대를 통해, 매년 1,063억원의 추가적인 일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기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 삭제로 법령 개정 시

- (현 행)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기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
- (개선안)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기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공사

⇒ 개선효과 :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를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수급영역 확대를 통해 매년 2,598억원의 추가적인 일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 (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관련 개선효과

▶ 괄호문구 “(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법령 개정 시

- (현 행) (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 (개선안) (단, 근거리통신망(LAN)에 접속되는 6대 이상의 정보통신설비(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각 목의 공사는 제외한다)

⇒ 개선효과 : 물리적 통신선로 6회선 이상 보다, 근거리통신망(LAN)에 접속되는 6대 이상의 정보통신 설비(단말장치)로 제한한 수급영역 확대를 통해,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시스템 설치, 유지 보수 공사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소 SI(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개선 시 매년 “1,222억원”의 추가적인 일거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측

### ○ IoT 컨버전스(Convergence)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연계성

- ▶ 앞으로 일거리 창출을 위해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새로운 영역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정보통신공사 영역에서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할 센서(sensor) 및 단말기(device) 등이 많아지는 유형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측
- ▶ 공사발주가 되는 형태는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가 통합된 토탈 솔루션 등장으로, SI와 NI가 혼합된 공사 발주가 많은 것으로 예상
- ▶ 개인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에서 국가(공공시설), 공공기관, 회사, 단체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관련 설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분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수급영역 확대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

### ○ IoT 융합을 통한 다른 경제체제로의 대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긴밀한 대응이 필요

- ▶ "IoT 융합 공사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는 발주기관 담당자 뇌리에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담당자들이 주기적인 방문과 설득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반드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
- ▶ IoT를 통한 산업간 융합의 확산은 일거리 창출의 기회이자, 타산업으로 흡수될 수도 있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긴밀한 대응과 준비를 통해 초연결시대의 새로운 인터넷 융합 경제 속에서 신산업 창출과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수급영역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